

西獨 改正登錄 意匠法(3)

調 查 部

〈前號에서 계속〉

Ⅲ. 新 登 錄 法 디자인에 관한 情報事項

1. 신 등록디자인법은 독일 특허청에 1988년 7월 1일부터 제출된 출원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 모든 등록디자인은 출원인이 지정한 표현으로 서지적 사항과 함께 의장공보에 공개되며 물품분류별로 게재된다.

3. 디자인공보에 상술한 공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3차원(입체)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1988년 7월 1일부로 더 이상 위탁할 수 없다. 도면이나 사진의 형태로 디자인을 표현한 것만 허용된다. 다만, 표면외관에만 관한 디자인의 경우나 독일특허청이 아주 고율의 추가요금납부를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3차원(입체) 디자인의 기탁을 허용하는 디자인의 경우만은 예외이다. 그러나 이는 디자인의 표현수단으로 명백하고

또한 완전하게 충분히 나타낼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4. 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취소를 구하는 자는 취소청구를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소 절차에서의 이유는 디자인 출원일에 등록할 수 없는 것이라든가 출원인이 그 출원을 할 자격이 없다는 등이 있을 수 있다.

5. 지금까지로 보아서 50개 디자인까지 연합출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출원의 모든 디자인은 동일물품분류에 속해야 한다. 연합출원은 3차원(입체) 2차원(평면) 디자인 모두 가능하다.

6. 6개월간의 신규성 유예기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있다. 이 신규성 유예기간(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실용신안법의 경우에서 처럼)은 최초 우선일로부터 기산하며 독일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장 출원전에 시장성 조사등을 위하여 신규성유예기간을 널리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디자인출원이 최초 해외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고 그 해외출원이 신규성유예기간내에 출원된 경우에는 시장조사가 그 독일의장출원의 신규성을 해하지 않는다.

7. 표현을 포함한 디자인의 공개는 독일특허청에의 출원일로부터 18개월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 디자인의 실제적 공개료를 지불하기 전에 마케팅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공개요금을 한층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연합출원의 경우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들 수 있다). 한그룹의 디자인들 중 하나의 디자인의 표현만 공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그룹의 다른 모든 디자인의 표현들을 공개되지 않으며 각기 디자인의 독창성이 없고 공개된 기본디자인의 변형으로 간주한다.

8. 법적보호기간은 실제적으로 간단하다. 최초 보호기간은 5년, 그후 5년씩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수수료는 소정기간내에 과태료만 지불하며 추후 납부할 수 있다.

디자인 혹은 型의 著作權에 관한 法

—등록 디자인법, 1986. 12. 24 公布—

1988. 1. 1 發效—

§ 1.

(1) 공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혹은 型(Model)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적으로 그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2) 본 법에서의 디자인 혹은 型은 신규하고 독특한 生産品만을 의미한다.

§ 2.

國內 商業的 機關에 의해 고용된 도안사, 화가, 조각가 등이 그 商業的 機關의 所有者의 수에 의해 또는 그 所有者 때문에 창작한 디자인과 모형의 경우는 契約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機關의 所有者가 그 디자인과 型의 저작자로 간주된다.

§ 3.

저작자의 권리는 그 승계인에게 귀속된다. 이 권리는 계약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으로 제한을 가하거나 제한없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 4.

새로운 디자인이나 型의 창출을 위해 어떤 디자인이나 型의 각 모티브를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은 모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5.

확포의 목적으로 권리자(§1~§3)의 허락없이 디자인이나 型을 재현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음의 경우도 금지된 것이다.

1. 복제가 原제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작되었거나 혹은 원거래처와 다른 거래처에 매대를 계획했을 때

2. 복제가 원래의 것과 다른 次元이 색채로 되었거나 또는 특별히 주의깊게 관찰했을 때만

인지할 수 있는 변경부분만이 원래의 것과 다를 때.

3. 복제가 원래의 것으로부터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 6.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금지된 복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1. 디자인이나 型의 개개의 복제가 상업적인 확포와 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2. 개개의 디자인이나 型의 재현을 서면으로 설명한 경우

§ 7.

(1) 디자인 또는 型의 창작자나 그의 법적 승계인은 그 디자인이나 型이 각기 독일 특허청의 디자인등록부에 등록출원이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재현이나 모방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디자인 혹은 모형의 공개나 再現物의 배포가 공공질서나 윤리에 반하는 경우 출원에 의해 모방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없다. 디자인이나 型의 再現物배포가 법률이나 행정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와같은 위반이라 보지 않는다.

(3) 출원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서면 등록청구서

2. 본 법에 의한 보호를 청구하는 특성들을 명백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나타낸 디자인 혹은 모형의 사진 기타 도면에 의한 표시

(4) 물품의 표면에 관한 디자인만에 대해서 본 법에 의한 보호를 청구할 경우에는 사진이나 기타 도면에의 표현 대신에 물품 자체나 그 일부에 관한 2차원(평면)의 디자인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본 법에 의한 보호를 물품의 2차원의 구조 뿐만 아니라 3차원의 구조에 대해서도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3차원 구조에 관하여는 상기 (3)항의 No2. 표면구조에 관하여는 (4)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6) 출원인 자신이 ㉠ 그 자체는 물론 사진이나 기타 도면에 의한 표현을 제출함으로써 사진이나 기타 도면에 의한 표현이 보호를 청구하는 특성들을 충분히 명백하게 나타내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특허청은 사진이나 기타 도면에 의한 표현대신에 ㉠ 그 자체를 제3항 No2에 의한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표에 의한 추가료를 납부해야 한다.

(7) 표현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명을 첨부할 수 있다.

(8) 출원과 함께 그 표현에 나타난 디자인이나 ㉠이 지정을 받아야 할 물품 분류를 표시하는 목록을 동봉할 수 있다. 出願인이 그 디자인이나 ㉠을 他物品類의 제품에 옮겨 구현하고자 하면 그러한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9) 다수의 디자인이나 ㉠을 하나의 연합출원으로 묶을 수 있다. 이와같은 연합출원은 디자인이나 ㉠이 50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때 디자인이나 ㉠들은 반드시 동일 物品類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10) 출원인은 연합출원을 분할할 수도 있다. 각 분할출원에 대하여는 원출원일과 그 우선권이 보지된다. 이미 납부한 출원료외에 수수료표에 따라 각 분할출원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최저요금의 합계와의 분할에 대해 지불되어진 차액을 소급해서 납부하여야 한다.

§ 7a.

출원인이나 그의 법률상 승계인이 그 출원의 우선일전 6개월 이내에 제품을 공중이 입수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동일한 불변인 디자인이나 ㉠을 출원하면 이는 신규성이나 독창성(§1條 2項)을 判斷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 7b.

(1) 국제조약에 입각해서 동일 디자인이나 ㉠에 관해 이전 외국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者는 출원일 후 2개월 이내에 그 이전 출원의 일자 및 출원국 명을 명시하여야만 한다. 출원인이 출원일자 및 그 국가명을 명시한 때에는 동일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이전 출원의 출원번호의 명시와 출원서사본 1부의 제출을 통지후 2개

월 이내에 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이미 출원번호를 명시하고 출원서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기 (1)항에 의한 명시가 기간내에 되지 않거나 그 사본이 기간내에 제출되지 않는 때는 우선권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청은 이를 확인하고 디자인등록부예의 우선권등록을 거절한다.

§ 8.

(1) 디자인등록부는 특허청이 보존한다.

(2) 特許廳은 디자인의 표현은 물론 각 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디자인 공보에 1회 공개하는 방법으로 출원의 디자인등록부등록을 공개한다. §7條 4항 내지 6항의 경우에는 公告를 위해 필요한 표현이나 물품자체의 재현물은 특허청이 제공한다. 이 공고는 本法下에 보호되는 특성들의 완전하게 재현 및 인식가능하게 한다는 보증은 없이 하는 것이다. 공고비용은 경비에 징수한다. 인식성이 없어도 보호된다.

§ 8a.

(1) 출원인이 등록청구서에 연합출원 중 특정 디자인이나 ㉠을 기본 디자인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그 변형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특허청은 이 선언을 디자인등록부에 등재하고 §8조 2항에 의한 공고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등록을 기재하고 기본 디자인의 표현만을 공개한다.

(2) 제(1)항에 의한 명시를 한 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은 변형이 기본디자인에서 벗어나는 특성이 있다고 해서 신규하고 독창성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3) 변형물에 대한 법적 보호는 기본 디자인의 만료와 함께 소멸된다. §7조(10)항은 상기 (1)항에 의한 명시가 된 출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8b.

(1) 출원과 더불어 디자인이나 ㉠의 표현 공고를 출원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8개월간 지연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가

제출되면 디자인등록부에 출원등록 사실만을 공고한다. 보호기간은 지연기간 종료와 함께 만료된다.

(2) 디자인이나 ㉮의 소유자가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수수료표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였을 때는 §9조1항에 의한 보호기간까지 보호가 된다. 요금이 소정기일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표에 의한 추가 요금을 납부한 때부터 보호가 연장된다. 기간 종료후 특허청은 디자인이나 ㉮의 등록권자에게 수수료표에 의한 추가요금을 포함한 수수료를 지연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지연의 종료와 함께 보호기간도 종료함을 통지한다.

(3) §9조(1)항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시까지 보호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두번째 문장에 따른 공고를 참고하여 표현의 재현공고를 한다. 이에 따라 §8조(2)항, (3)항, (4)항이 적용된다.

§8c.

(1) 출원과 함께 수수료표에 의한 출원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표현의 지연공고가 청구된 경우에는 수수료표에 의한 그 請求料를 出願料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 출원료나 표현공고 지연청구료가 납부되지 않은 때는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후 1개월의 종료전까지 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고지한다.

§9.

(1) 보호기간은 출원일 다음날로 부터 기산하여 5년이다.

(2) 보호기간은 5년씩 최고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호기간연장은 디자인등록부에 등록된다.

(3) 연장은 보호기간 종료전에 수수료표에 의한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效力이 있다. 요금을 소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수료표에 의한 추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호기간 만료후 2개월이 경과되면 특허청은 등록권자에게 추가요금을 포함한 요금을 통지후 4개월 이내에 납부

하지 않으면 보호기간의 만료로 등록디자인이나 ㉮이 취소될 것이라는 점을 통지한다.

(4) 특허청은 등록권자의 요청으로 통지서발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그등록권자가 현재의 경제적 상황때문에 현재로서는 동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점을 증거에 의해 입증한 때에 한한다. 특허청은 일정기간내에서 분할납부에 의하여 지연을 시켜줄 수 있다. 분할납부금 중 어느하나라도 소정기간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특허청은 등록권자에게 통지후 1개월 이내에 잔여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의장등록부의 등록이 취소될 것임을 통지한다.

(5) 통지서발급에 대한 지연청구가 없는 경우라도 통지후 14일 이내에 청구가 지연될때 대한 충분한 이유와 함께 유예청구가 되면 납부를 할 수 없었다는 정당한 증거를 제출한 후에는 수수료와 추가로 납부를 유예 하도록 할 수 있다. 분할납을 조건으로 유예를 시켜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예금액이 소정기간내에 납부되지 않는 때는 특허청은 재통지를 함과 동시에 잔액전부의 납부를 요구한다. 2차 통지후에는 더이상의 유예는 허용하지 않는다.

(6) 청구에 통지가 지연된 경우(제(4)항)나 유예가 허용된 후 재발급해야 할 경우의 통지는 수수료납부기일 후 늦어도 2년내에는 해야한다. 잔액의 미납부로 디자인등록부상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분납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계속>

<※ 24p에서 계속>

J. V. (1987): Biosensors 3, In Press.

13. Brooks, S. L.; Ashby, R. E.; Turner, A. P. F.; Calder, M. R.; Clarke, D. J.: Biosensors 3, In Press.

14. Kress-Rogers, E.; D'Costa, E. J. (1986): Anal. Proc. 23, 149-153.

15. Turner, A. P. F.; Ramsey, G.; Higgins, I. J. (1983): Biochem. Soc. Trans. 11, 445-448.

16. Turner, A. P. F.; Cardosi, M. F.; Ramsey, G.; Schneider, B. H.; Swain, A. (1986): In: Biotechnology In The Food Industry, Online International, Pinner, UK, 97-116.

17. Rawson, D. M.; Willmer, A. J.; Cardosi M. F. (1987); Toxicity Assessment, In Press